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
----------	------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의자 : 김관영 · 황주홍 · 주승용

박선숙 · 박용진 · 박주현

정동영 · 이동섭 · 김경진

최경환^국 · 김광수 · 김종회

채이배 · 김성식 · 김삼화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 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

로 완화되면 61개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각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p> <p><u><단서 신설></u></p>	<p>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p> <p>-----</p> <p>-----</p> <p>-----</p> <p>-----</p> <p>-----.</p> <p><u>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u></p>
<p>1. ~ 3.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